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18일, 박성훈 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3.12.) 상정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6.3.17.)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
(원안가결)

제2차 교육위원회(2026.3.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성훈 의원)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
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고, 급식운영비의 경우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부모가족 이외에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하여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윤상열)

개정안은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조손가족 등의 학생’이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현재 급식비 지원은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되어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중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점심급식이 제공되고 있지만,

기숙사 운영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방과후 수업에 따른 조식·석식에 대한 급식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희망 학생에게 “수익자부담”으로 실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식품비 및 급식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자가 부담하는 상황이므로,

개정안이 입법화되어 시·도교육청과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경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손가족 등의 지원대상자 학생에 대한 우선적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고민정)

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학생, 「 <u>한부모가족지원법</u> 」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 4. (생 략) ③ (생 략)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2.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